

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

가. 가업상속인(신청인)

성명	주민등록번호	
가업종사기간	임원/대표이사 취임일	
주소	(☎)	
세무대리인	성명	사업자등록번호
	생년월일	연락처

나. 가업현황

상호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	
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개업연월일	업종	
기준총급여액	기준고용인원	

다. 중소기업 여부(해당되는 곳에 √ 표 기재)

중소기업 여부	[] 해당 [] 해당 안됨	상장여부 (상장일) [] 상장(. .) [] 비상장
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라. 피상속인

성명	주민등록번호	
가업영위기간	대표이사(대표자) 재직기간	
최대주주등여부	특수관계인포함 보유 주식 등 지분율	

마. 가업상속 재산가액

종류	수량(면적)	단가	가액	비고

바.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 :

원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등기승낙서

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) 2.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 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.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. 건물 등기사항증명서	

작성방법

- "나. 가업현황"에서 '업종'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.
- "나. 가업현황"에서 '기준총급여액'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을 적습니다(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하되, 가업상속공제 당시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 해당하는 인원만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).
- "나. 가업현황"에서 '기준고용인원'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적습니다.
- "다. 중소기업 여부"에서 '중소기업'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.
- "마. 가업상속 재산가액"과 "바.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"는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표 1(가업상속재산명세서) 및 같은 서식 부표 2(가업용 자산 명세)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.

가업상속재산명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가.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

구 분	자 산 종 류	㉓ 금 액	㉔ 담보채무액	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(㉓-㉔)
가업상속 재산가액	토지			
	건축물			
	기계장치			
	기타			
	① 계			

나.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

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				
사업관련 자산 가액 비율	③ 총자산가액			
	사업무관자산 가액	㉗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 해당자산		
		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9조 해당 자산 및 임대용부동산		
		㉙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1조제1항 제2호 해당자산		
		㉚ 과다보유현금		
		㉛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 하는 주식·채권 및 금융상품		
	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			
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(③ - ④)				
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(⑤ ÷ ③)				
⑦ 가업상속 재산가액 (② × ⑥)				

다. 가업상속 납부유예 가능 상속세 납부세액

⑧ 상속세 납부세액		⑨ 총 상속재산가액
⑩ 납부유예 가능 세액 [⑧ × {(① 또는 ⑦) ÷ ⑨}]		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: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2.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: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(재무상태표 등)	수수료 없 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"㉠ 계"란은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,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(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), 건축물,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.
2. "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"란은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,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.
3. "㉢ 총자산가액"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.
4.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㉦ ~ ㉨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.
5. "㉤ 사업관련 자산가액"란은 "㉢ 총자산가액"에서 "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"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.
6. "㉦ 가업상속 재산가액"란은 "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"에 "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"을 곱한 가액을 적고, 해당 가액을 「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」의 "마. 가업상속 재산가액"란의"가액"란에 적습니다.
7. "㉧ 상속세 납부세액"란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)의 ㉞ 공제·면제 후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.
8. "㉨ 총 상속재산가액"란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)의 총액을 적습니다.
9. "㉩ 가업상속 납부유예 가능 상속세 납부세액"란의 금액을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2호의2서식)의 "바.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"란에 적습니다.

